

(별표)

부 조 금 지 급 표

<개정 “22.7.12”>

1. 축의금 및 조의금(3년 이상 재직자에 한함)

(단위 : 원)

축 의 금	금 액	조 의 금	금 액
회원결혼	200,000	회원사망	1,500,000
자녀결혼	200,000	배우자, 자녀 사망	500,000
		부모, 배우자의 부모 사망	200,000

- ① 여회원이 결혼을 사유로 퇴직 시 1개월 이내에 결혼하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축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(개정 `22.7.12).
- ② 제19조에 의한 부조금 지급은 동일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.
(예시: 자녀 결혼,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별세)(개정 `22.7.12).
- ③ 제19조에 의한 부조금 지급은 재직기간 3년 이상 회원에 한하여 지급한다
(개정 `22.7.12).

2. 위로금

- ① 회원질병 (20일이상 치료 결근자) : 100,000원
- ② 회원 수재.화재 피해시 : 200,000원(사학연금법 재해보상 기준 준용)

3. 퇴직위로금 :

2000년 12월 이전				2001년 1월 이후	합 계 (E) = (C) + (D)
근무개월수 (A)	2000년 12월 본봉	본봉 1%(B)	소 계 (C)=(A)*(B)	개인별 실제 납부액(D)	

- ① 76. 3. 1.(친화회 발족일)로부터 기산한다.
- ② 휴직기간 및 파견 등으로 회비가 공제되지 아니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③ 퇴직위로금은 합계 (E)이며, 가산율은 근속년수에 따라 별도 적용한다(개정 `22.7.12).
- ④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예상하여 책정한 가산율은 총회 결과에 따르며, 추후 변동될 수 있다(개정 `22.7.12).
- ⑤ 퇴직위로금은 일시금 지급 또는 분할 지급한다(개정 `22.7.12).
1. 퇴직위로금 1천만원 이상: 12개월 분할지급
 2. 퇴직위로금 1천만원 미만: 6개월 분할지급
- (퇴직위로금 지급 시 친화회 자산이 부족할 경우 본인 동의하에 분할지급)

4. 대여 이자율은 5%로 의결한다(신설 `22.7.12).